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포항시보

제 867호 2012. 1. 25(수)

◀ 공 시 ▶

○ 포항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제2012-4호) 2

◀ 공 고 ▶

○ 도로지정 공고 (제2012-7호)..... 4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2 - 4호

포항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 30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(중로2-120)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(도로)의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2년 1월 18일

포항시장 박승호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
- 또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120	20	보조 간선	1,210	중명IC	구역계	일반 도로	기존 제방 도로	포항시고시 제2001-552호 ('01.12.06)	
변경	중로	1	120	20	보조 간선	1,210	중명IC	구역계	일반 도로	기존 제방 도로	포항시고시 제2001-552호 ('01.12.06)	일부 선형 변경

나. 변경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-120	중로 2-120	•일부 구간 선형변경	•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천선(형산강, 국가하천)을 침범하지 않게 일부 구간 선형변경

3. 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 실음 생략)

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uris.moct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054-270-3466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포항시 남구청 공고 제2012 - 7호

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건명 : 도로의 지정
- 2. 도로의 위치지정내용

대지위치	도로지번	지정면적(㎡)	도로길이(m)	도로너비(m) (평균값)	지정일자	비고
포항시 남구 대도동	446-1	45	22	2m	2012.1.18	

- 3. 도면 : 남구청 건축지적과 비치

2012. 1. 18

포항시 남구청장

문의처 : 건축과(054-270-6475)